

우리나라 TMR제도의 정착방향



김 인 식
본회 조직지도부 부장

↑ 입개방 문제가 본격 거론되면서 낙농업에 변화를 가져다 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낙농사료제도의 개선일 것이다. 축산분야에서 개방대응 방안이 많이 제시되었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지만 낙농사료제도의 변화만큼 농가 스스로 참여하고 관심을 보이는 제도의 변화는 없었고 여겨진다. 그만큼 낙농에 있어 사료제도의 개선은 낙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과제이고, 시대추세에 맞게 개선해야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현실문제인 것이다.

낙농사료제도의 개선은 물론 오래전부터 거론되었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사안이다. 이미 기존 배합사료에 의존해서 낙농경영을 영위하는 문제점과 단점이 누누히 지적되면서 새로운 전환을 주장하는 소리가 80년대부터 터져나왔던 것이다.

지금 TMR 사료에 대해 모르는 낙농가가 없다면 이미 우리나라 낙농에 있어 이 제도는 정착된 단계로 보아도 될 것이다. 다만 외국에서 도입당시 부터 적절한

용어를 구사하지 못한 채 영문 약자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할 정도라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무관심 및 낙농가의 강렬한 관심도는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이제 전국 어디를 가도 젖소 사료문제가 TMR과 직결되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만큼 TMR 사료는 보편화되어가고 있고, 낙농가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사료제도의 도입내지 개선이 낙농가 자신이 나서서 이렇게까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만큼 절실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사실, 농가단체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쉽게 표현되는 어휘이면서도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경영개선 내지는 여건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젖소의 생리에 맞는 사료급여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보다 양질의 원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어려운 현실과제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현실문제를 낙농가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때마다 우리 낙농의 가능성을 밝다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제도적 정착이 우선과제

TMR 사료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과제이고, 따라서 사료관리법의 개정으로 이를 가능케 하자는 것이 낙농가의 여망이었다. 그래서 '94년말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기대했던 낙농가들은 법 개정이 무산되자 다시한번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반드시 개정시켜야 한다는 여야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개정할 의사를 밝혔다가 실제 법개정 순간에는 외면해 버렸기 때문이다. 또 외면 사유조차 이해가지 않는다. 기존의 "배합"사료와 개념이 유사하여 혼동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TMR을 "혼합사료"란 표현으로 입법추진하자 용어의 혼동을 우려해서 법개정이 거부되었다는데 낙농가의 개탄과 실망의 소리가 거세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법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기존 반대세력의 작용을 짐작하기 때문이다.

낙농가의 절실한 숙원과제가 이렇게 단순한 용어 혼란을 사유로 법개정이 되지 않는데 따른 우리 정치 풍토는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몰고간 기존 이해세력에도 반성의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낙농가가 있고 영리도 있지, 낙농가 주장과 현실을 덮어둔다고 TMR사료제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용어혼동 때문이라서 개정이 곤란하다는 사유였다면 다른 적절한 용어를 대체해서라도 해결되도록 해야 진정한 농민의 대변적 역할을 국회에서 처리하였노라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당시 왜 법개정을 외면하였느냐는 전국 TMR 배합 운영협의회의 항의성 공문의 답변에 국회와 정부는 향후 사료공정규격등 사료관련 법정 개정시 혼합사료의 개념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화 하겠다는 회신만 보내온 채, 아직 침묵뿐이다.

TMR은 지역별 혹은 낙우회사 조합단위로 운영된다. 뜻을 같이하는 낙농가들이 공동출자하여 적절한 장소를 물색 구입하고 배합소 기계나 시설 설치를 통해 가동시키고 있다. 전국의 70여개 배합소들이 이름

TMR 사료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과제이고, 따라서 사료관리법의 개정으로 이를 가능케 하자는 것이 낙농가의 여망이었다. 그래서 '94년말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기대했던 낙농가들은 법 개정이 무산되자 다시한번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법개정이 안된 이유는 TMR이 기존의 "배합"사료와 개념이 유사하여 혼동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TMR을 "혼합사료"란 표현으로 입법추진하자 용어의 혼동을 우려해서 법개정이 거부되었다는데 낙농가의 개탄과 실망의 소리가 거세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법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기존 반대세력의 작용을 짐작하기 때문이다.

대로 소속회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법적인 뒷받침이 되었을 경우 정부의 양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과 배합소 규격등에 대해 표준화되어 훨씬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 대개 주위 TMR 배합소의 예를 본받아 설치하거나 모범적인 운영의 경우를 참고하는 정도이고, 전적으로 설립코자 하는 주체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법적인 양성화 조치가 되지 않음으로써 더욱 오랜 시간동안 낙농가들이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이외의 조치가 없는 것이다. 본격적인 지자체 시대에 접어들어 다행히 일부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행정에서 지원을 받기도 한다. 낙농가의 힘이 집결되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산업의 조속한 제도화를 기대하는 바램이다. 특히 일부 지역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 줄 적절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동정의 소리가 낙농가에게 전달되어 낙농가들로 하여금 제도화의 강력한 요구를 제기케 하고 있다. 대부분이 영농조합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인 설립 준비단계에서 부터 이미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TMR 배합소를 모방하는 정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도이다.

제도화되지 않음으로서 현실로 부담을 느끼게 하는

우리나라 TMR현황과 개선방향

것이 바로 세금의 문제이다. 배합사료의 경우 젓소 36두까지는 부가세가 영세율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TMR 사료의 경우는 예외이다. 아예 어떤 TMR 배합소에서는 원료 구입단계에서 부터 개별회원 농가 명의로 분산 구입하는 형태를 통해 세금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낙농가의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세금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TMR 사료로 엄연한 낙농사료인 만큼 더이상 외면되어서는 아니된다.

기술 표준화가 시급하다

TMR사료가 전국적인 붐으로 확산되면서 TMR에 대한 기술적인 체계 정립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부권 일부에서는 TMR 사료 생산 초기였던 80년대 후반에 TMR사료 급여로 젓소를 버리게 되었다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TMR에 의존하여 1여년 사료급여 후 젓소 생리체계가 엉망이었다는 등의 소리는 낙농인 모두를 가슴아프게 하는 일이다. 낙농분야 특히 사양분야의 전문가들이 엄청난 숫자이면서도 TMR 사료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저 딱한 노릇이다. 물론 지역별로 혹은 배합소별로 차질 없이 배합이 이루어지고 낙농가 요구에 부응하는 사료생산이 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배합소가 설립되어 낙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공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체계가 미흡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교범한권 제대로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이러한 일은 특정 배합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전체 낙농산업 차원에서 논의되고 관심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본다. 낙농산업의 기초인 낙농가의 숙원사업에 그것도 기술적 체계가 가장 중요한 사업에 외면되어서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첫째로, 각 배합소별로 TMR 기술요원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학회에서 일정기간 기술연수등의 과정을 수립, 기술요원의 양성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낙농목장 만큼은 가장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우수한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다. TMR배합소 회원중에서 기술적 지도대지 전문

현재 TMR 배합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TMR 배합소를 관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자원의 연대기구가 없다. 각종 문제점을 공동대처하면서 개선해 나가거나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안에 대응키 위한 연대기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의 능력발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모든 배합소가 다 참여하여 법적 양성화조치, 부가세 영세율추진문제, 기술적 전문화추진 문제등 현안 과제에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숙제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TMR 배합소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달린 사안인 만큼 배합소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적인 선행과제라고 본다.

성으로 전체회원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은 반드시 전문 지도기관에서 일정기관 교육을 수료토록하여 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교육을 담당할 주체역시 충분한 대비를 하고 모자람 없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기술교범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TMR 사료를 급여하는 낙농가는 최소한 목장내의 조사료 성분이나 TMR사료의 영양적 구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술향상을 통한 사양관리 체계의 과학화와 전문화 만이 TMR 사료제도의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TMR배합소의 연대 기구가 있어야

현재 TMR 배합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TMR 배합소를 관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차원의 연대기구가 없다. 각종 문제점을 공동대처하면서 개선해 나가거나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안에 대응키 위한 연대기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의 능력발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전국 TMR 배합소 운영협의회」가 있고 실무 업무를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맡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배합소 운영협의회가 적극 활성화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모든 배합소가 다 참여하여 법적 양성화조치, 부가세 영세율추진문제, 기술적 전문화 추진 문제 등 현안 과제에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숙제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활동이 미진한 사유중의 하나가 우리 협회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자평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TMR 배합소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달린 사안인 만큼 배합소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적인 선결과제라고 본다. 배합소 운영협의회 발족당시 낙농가 위주의 배합소 즉 영리목적이 아닌 배합소만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향후 이 문제는 협회에서도 적극 뒷받침되도록 노력할 과제이다. 배합소의 연대기구가 결속될 경우 현재 노출된 정책적 과제를 풀어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대다수 낙농

가의 사료제도이고 낙농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단합만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연대기구를 통해 회원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애로사항의 토로를 통한 문제제기, 공식적인 행사 개최를 통한 공개리에 문제해결,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언론을 통한 여론조성 등 배합소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의 협의기구를 재편하여 명실공히 전국의 배합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연대기구로 확대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이 연대기구가 제대로 활동만 한다면 당면한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실제 낙농가의 권익보장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가령 원료의 공동구매를 비롯한 원료곡물의 직접적인 공급 방안 등 특정 배합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안들의 해결에 적지 않은 가능성이 엿보일 것이다. 또 연대기구가 활성화될 경우 여러분야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것이다

지금! 그리고 항상!



협회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십시오!
☎ (02) 588-7055~6

양질!

알 팔 파!

알 팔 파!

알 팔 파!

알 팔 파!

알 팔 파!